장학금 지급규정

(전면개정 202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사이버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리 대학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 교외기관, 개인 기부자가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학위원회) ① 제1조의 목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제4조(선발요건) ① 장학생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직전 학기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
3.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②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학기 교내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가성 장학금(근로장학금, 리더십장학금, 봉사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학과장학금, 우수협약기관추천장학금, 특별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포상성 장학금, 기타 장학금의 선발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장학금과 보훈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상위규정을 따른다.

제5조(신청) ① 별도로 규정된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입학학기 중 별도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장학금은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장학금은 입학 학기 신청한 장학금으로 계속 지급되며 교차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보훈장학금과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은 상위규정에 따라 예외로 한다.

제6조(지급) ① 장학금은 등록금의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방법이 지정되어있는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생의 결정이 등록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중복지원 하여야 할 경우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을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③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금 별로 따로 정한다. 단, 대가성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포상성 장학금은 제외한다.

제7조(지급기한) 지급 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재학 중 8학기에 한한다. 단,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은 상위규정을 따른다.

제8조(선발 제한) 장학생으로 선발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미등록 휴학자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
3. 학칙 위반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장학금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제9조(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생활비 장학금
3. 포상성 장학금
4. 국가기관 또는 교외기관, 개인 기부자가 중복지원을 허용한 장학금

제10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8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장학생의 수업료 환불기준) 장학생이 자퇴(제적)하여 수업료를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총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3장 장학금 종류 및 관리

제12조(장학금 구분) 우리 대학 장학금은 지급 재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교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제13조(교내장학금) ① 교내장학금은 [별표 2]의 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의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동점자 처리기준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전체수석, 학과수석)
2. 성적우수장학금(학과수석, 학과차석, 학과성적우수)

③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사랑(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학금
2. 장애인장학금
3. 만학도새출발(구,고령자)장학금

4. 다문화새출발(구, 다문화)장학금
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0~8구간 학생에게 지급한 교내장학
6. 장학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게 지급한 교내장학

④ 기타 등록금 감면 목적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장학금
2. 북한이탈주민장학금
3. 위탁장학금(군, 산업체)
4. 공직자(구, 나라사랑Ⅰ)장학금
5. 병역명문가장학금(구, 나라사랑Ⅱ)장학금
6. 건양교직원(구, 건양가족)장학금
7. 건양한가족(구, 건양행복)장학금
8. 협력기관협약(구, 일반협약·고교협약·전문대협약)장학금
9. 고졸 후 입학장학금
10. 건양새출발장학금(구, 건양인성)장학금
11.직장인새출발장학금(구, 직장인)장학금
12. 군가족새출발장학금(구, 군가족)장학금
13. 계절학기장학금
14. 시간제등록생장학금

⑤ 기타 등록금 감면 목적 외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장학금
2. 봉사장학금
3. 리더십장학금
4. 멘토링장학금
5. 학과장학금
6. 우수협약기관추천장학금
7. 특별장학금
8. 기타 대가성, 생활비성, 포상성 장학금

제14조(교외장학금) ① 국가기관, 공공단체, 외부의 장학법인, 단체, 개인(이하 '장학기관'이라 함)이 제공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지정장학금 : 장학기관이 미리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추천장학금 : 장학기관이 총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지급하는 경우

② 전항 제2호의 대상자 추천은 그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단,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외부 장학금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1(희영장학금) 희영학술문화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0조의2와 제21조의 2항은 2017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8조의2(멘토링장학금)은 2019학년도 1학기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7조와 별표1은 2020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9학년도까지의 신・편입생은일반교류 협약장학금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7조 ①항 4호는 2019학년도 선발된 우수협약기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2(멘토링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프로그램 참여자부터 적용한다.
3.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6(시간제등록생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시간제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은 2020학년도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전면개정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동점자 처리 기준
재학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직전학기 총점이 상위인 자 3. 직전학기 전공성적이 상위인 자
신입생	해당연도 입학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

[별표 2] 연도별 교내장학금 종류

- 2022학년도(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비고
입학장학	건양 새출발 장학금	우리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 전원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20%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타 교내 장학중복 수혜 불가
	직장인 새출발 장학금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대사업자 제외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20%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택 1	
	군가족 새출발 장학금	현역 부사관 이상 군인 또는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20%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택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닐 경우)	
	다문화 새출발 장학금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20%	·외국인등록증, 귀화증서 택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닐 경우)	
	만학도 새출발 장학금 (만60세 이상)	입학당시 (학기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20%	-	
	고졸 후 입학 장학금	3년 이내 특성화·일반계·방통고·검정고시 졸업(합격)자	3년	입학금전액 수업료30%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교졸업증명서 택 1	
	협력기관 협약 장학금	MOU협약기관 조건 해당자	1학년-4년 2학년-3년 3학년-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 1학년-25% 2학년-30% 3학년-30%	재직증명서, 등본, 졸업증명서, 회원증명서 택 1	
	건양한 가족 장학금	건양중·고등학교,건양대학교(대학원),건양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본인 및 재학생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동반입학 :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2년	입학금 전액 수업료 50%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택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닐 경우)	
	건양교직원 장학금	건양교육재단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4년	입학금 전액 수업료 5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닐 경우)	

구분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비고
입학장학	공직자 장학금		공무원,국·공립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직)원) ※공무직, 계약직 포함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재직증명서	*등록금 범위 내 지급 *타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
	병역명문가 장학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고 본교로 입학한 자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병역명문가증 사본	
	다사랑 장학금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대상자증명서 택 1	
	장애인 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상이등급 포함)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장애인등록증 택 1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확인서	
	보훈 장학금	보훈대상	보훈대상자 본인, 순직배우자	학기 제한 없음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손)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기수혜 학기 포함 8개 학기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4년	입학금50% 수업료50%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5년이내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내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5년초과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초과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위탁 장학금	군위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학군제휴에 의하여 교육부의 추천확인을 받은자로 본교 특별전형 입학한 자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택 1	
		산업체위탁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및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본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택 1	

구분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비고
재학장학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전체 수석	신편입생 중 전체수석 입학생	1년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타 교내 장학 중복 수혜 가능
		학과 수석	신편입생 중 학과수석 입학생	입학 학기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	
	성적 우수 장학금	학과 수석	학년별 학과수석 (재학생)	성적 취득 직후 학기	수업료전액	-	
		학과 차석	학년별 학과차석 (재학생)	성적 취득 직후 학기	수업료 80만원	-	
		학과 성적 우수	학년별, 학과 정원 10% 범위내 우수자 (수석,차석 장학생 포함 정원 10%)	성적 취득 직후 학기	수업료 50만원	-	
	리더십 장학금	총학생 회장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30만원	·추천서 ·통장사본	*생활비성 (등록금 범위 외) 지급 가능 *타 교내 장학 중복 수혜가능
		학년 대표	학과임원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20만원	·추천서 ·통장사본	
	멘토링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멘토)에게 지급하는 활동 장학금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별도지정	별도지정	
		최우수 멘토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최우수 학생(멘토)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별도지정	별도지정	
		우수 멘토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차순위 학생(멘토)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별도지정	별도지정	
	학과장학금		교수추천을 받은 자 (학과운영 지침)	1인 1회	별도지정	별도지정	
	우수협약기관 추천장학금		직전학년에 우수협약기관으로 선발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추천 학기 포함 1년	별도지정	별도지정	

구분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비고
기타장학	계절학기 장학금	계절학기 신청 학생	당해 학기	수업료20%	통장사본	
	시간제등록생 장학금	본교 졸업 후 입학한 시간제등록 실습이수자	당해 학기	수업료50%	통장사본	
	특별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추천, 선발된 자	별도 지정	별도지정	별도지정	
	근로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가사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기준 활동 시간 내	한국장학재단 지침	출근부	

- 2021학년도(2021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비고
건양인성 장학금	우리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 전원		1년	수업료 40%	-	*등록금범위 내 지급 *타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
직장인장학금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대사업자 제외		1년	입학금전액 수업료40%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택 1	
군가족 장학금	현역 부사관 이상 군인 또는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		1년	입학금전액 수업료40%	·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택 1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장학금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1년	입학금전액 수업료40%	· 외국인등록증, 귀화증서 택 1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닐 경우)	
고령자 장학금	입학당시 (학기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1년	입학금전액 수업료40%	-	
일반협약 장학금	MOU 협약기관 조건 해당자	21학년도 이전 입학생	1년	입학금전액 수업료40%	협약기관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재직증명서, 등본, 회원증명서, 졸업증명서 택 1	
		21학년도 입학생	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30%		
고교협약 장학금	협약교등학교의 전체 구성원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30%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택 1	
전문대협약 장학금	협약대학교의 전체 구성원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30%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택 1	
건양행복 장학금	건양중·고등학교, 건양대학교(대학원 포함), 건양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본인 및 재학생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동반입학 :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2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택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닐 경우)	
건양가족 장학금	건양교육재단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닐 경우)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비고
나라사랑 장학금Ⅰ		공무원,국·공립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직)원) ※공무직, 계약직 포함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재직증명서	*등록금범위 내 지급 *타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
나라사랑 장학금Ⅱ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고 본교로 입학한 자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병역명문가증 사본	
다사랑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만원	기초생활수급권 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대상 자증명서 택 1	
장애인 장학금		심한 경우	장애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	4년	수업료40만원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택 1	
		심하지 않은 경우			수업료20만원		
보훈 장학금	보훈대상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수혜횟수 제한 없음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손)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기수혜학기 포함 8개학기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4년	입학금50% 수업료50%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5년이내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내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5년초과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초과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위탁 장학금	군위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학군제휴에 의하여 교육부의 추천확인을 받은자로 본교 특별전형 입학한 자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택 1재직증명서	
	산업체위탁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및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본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4년	입학금전액 수업료50%	재직증명서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비고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전체 수석	신편입생 중 전체수석 입학생	1년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	*등록금범위 내 지급 *타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
	학과 수석	신편입생 중 학과수석 입학생	입학 학기	입학금전액 수업료전액	-	
성적 우수 장학금	학과 수석	학년별 학과수석(재학생)	성적 취득 직후 학기	수업료전액	-	
	학과 차석	학년별 학과차석(재학생)	성적 취득 직후 학기	수업료 80만원	-	
	학과 성적 우수	학년별, 학과 정원 10%범위내 우수자 (수석,차석 장학생 포함 정원 10%)	성적 취득 직후 학기	수업료 50만원	-	
리더십 장학금	총학생 회장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30만원	·추천서 ·통장사본	*생활비성 (등록금 범위 외) 지급 가능 *타 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학년 대표	학과임원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20만원	·추천서 ·통장사본	
멘토링 장학금	멘토링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멘토)에게 지급하는 활동 장학금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별도지정	별도지정	
	최우수 멘토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최우수 학생(멘토)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별도지정	별도지정	
	우수 멘토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차순위 학생(멘토)	매 학기 종료 후 지급	별도지정	별도지정	
학과장학금		교수추천을 받은 자 (학과운영 지침)	1인 1회	별도지정	별도지정	
우수협약기관 추천장학금		직전학년에 우수협약기관으로 선발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추천된 학기 포함 1년	별도지정	별도지정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비고
계절학기 장학금	계절학기 신청 학생	당해 학기	수업료20%	통장사본	
시간제 등록생 장학금	본교 졸업 후 입학한 시간제등록 실습이수자	당해 학기	수업료50%	통장사본	
특별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추천, 선발된 자	별도 지정	별도지정	별도지정	
근로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가사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	기준 활동 시간 내	한국장학재단 지침	출근부	